

# 컴퓨터그래픽스·가상현실연구센터 규정

2002. 5. 17 제정

2010. 7. 7 개정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그래픽스·가상현실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사업) 연구센터는 컴퓨터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컴퓨터그래픽스·가상현실 분야의 기술 연구 및 연구개발
2. 컴퓨터그래픽스·가상현실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 양성
3. 정부, 산업체 기타 외부기관에서 위촉하는 연구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
4.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3 조 (소장·부소장) ①연구센터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소장과 부소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.

③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조직) ①연구센터에 비주얼컴퓨팅·가상현실 연구실, 디지털 매체경험 연구실, 영상통신 및 영상처리 연구실, 디지털 콘텐츠 연구실, 의료영상 가시화 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. (개정 2003.8.12)

②비주얼컴퓨팅·가상현실 연구실은 컴퓨터그래픽스와 가상현실/증강현실 분야의 기본 기술과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③디지털 매체경험 연구실은 3차원 오디오시스템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 및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술에 관한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03.8.12)

④영상통신 및 영상처리 연구실은 영상정보통신, 다중 영상정보 정합과 효율적인 영상압축 기술에 관한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03.8.12)

⑤디지털 콘텐츠 연구실은 컴퓨터 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가정, 교육, 문화, 산업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구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본항신설 2003.8.12)

⑥의료영상 가시화 연구실은 의료영상 분할, 정합, 동적 기능적 모델링, 다차원 가시화, 시술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기반에 대한 의료분야 활용 연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(본항신설 2003.8.12)

⑦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담당한다. (개정 2003.8.12)

제 5 조 (실장) ①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. 실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6 조 (연구위원 등) ①연구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조 (연구원 등) ①연구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 8 조 (행정인력) ①연구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(개정 2010.7.7)

제 9 조 (운영위원회) ①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그래픽스·가상현실연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자문위원회) 연구센터의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 11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(개정 2010.7.7)

제 12 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연구센터의 경비는 본교의 보조금, 정부·기업체 기타 외부기관의 지원금, 간접비 등으로 충당한다.

②연구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과에서 담당한다.

제 13 조 (운영세칙)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2. 5. 17 제정)

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8. 12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